



Tax Services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025



Contents

| | |
|---|----|
|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 | 2 |
| Tax rates; Tax residence; Tax payments; Business profits; Taxation on certain offshore income;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apital allowances; Disallowed deductions; Debt to Equity Ratio; Losses; Profit distributions; Deemed profit margins;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Transfer Pricing; Sovereign Wealth Fund | |
|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 13 |
| Normal tax rates; Concessional tax rates; Main Personal Relief; Tax residence; Registration and filing; Tax payments; Benefits-in-kind (BIKs); Social security system | |
|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 18 |
| General; Articles 21, 22, 4(2), 23 and 26 income taxes | |
|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국제조세협약 | 24 |
| Double Taxation Agreement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Multilateral Instrument; US FATCA | |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 32 |
| General; Non-taxable goods and services; Tax rates and tax base; VAT reporting; VAT facilities on certain goods/services; VAT on e-commerce | |
| Luxury-goods Sales Tax 사치품소비세 | 43 |
| | |
| Carbon Tax 탄소세 | 44 |
| | |
| Customs and Excise 관세와 소비세 | 45 |
| Import Duty; Export Duty; Excise | |
| Tax Concessions 조세혜택 | 48 |
| Income tax concessions; LST concession; Collective concessions on special project and special zones | |
| Regional Tax 지방세 | 59 |
| Regional Tax/Duty rates and “Opsen”; Land and Building Tax;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 |
| Stamp Duty 인지세 | 64 |
| | |
|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납부 및 신고 | 65 |
| Monthly tax obligation, Annual tax obligation, Early tax refunds | |
| Accounting for Tax 세무기장 | 69 |
| | |
| Tax Audits and Tax Assessments 세무조사와 세금추징 | 71 |
| | |
|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압류영장을 통한 징수 | 75 |
| | |
| 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불복과 해결 | 77 |
| Objections; Appeals; Other avenues for tax dispute resolution; Judicial Review Requests to the Supreme Court | |
| Contacts 연락처 | 80 |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

Tax rates 적용세율

일반적으로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3% 낮은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매출액에서 48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 분에 대해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하며, 초과분은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합니다.

Tax residence 세법상 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정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납세자와 동일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거주자인 납세자 및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직접 납부, 제3자 원천징수 또는 두 가지 혼합의 방법으로 조세 채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소득을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통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인도네시아가 원천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인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월 선납법인세 (PPh 25)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선납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법인세신고(Corporate Income Tax Return, 'CITR')를 기초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규 납세자, 금융리스회사, 은행, 정부소유기업, 상장회사 및 정기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 등은 특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특정소득에 대한 제3자의 원천징수 (*PPh 23*) 및 특정거래에 대한 선납법인세 (*PPh 22*, 수입법인세)도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선납으로 기납부세액을 구성합니다 (원천징수세 참조).

연간 선납한 법인세 총액 (*PPh 22, 23 및 25*)과 해외납부세액 (*PPh 24*)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이전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납부의무는 *PPh 29*에 따릅니다.

거주자인 납세의무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소득은 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됩니다. 최종분리과세 (*PPh 4(2)*)란, 제3자에 의한 원천징수로 해당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세 참조).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의 거래 상대방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PPh 26*).

Business profits 과세소득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특정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확보,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된 비용이 즉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xation on certain offshore income 특정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
인도네시아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역외 소득은 일정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에 재투자하거나 소비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해외 PE로부터 받은 소득;
-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해외에서 얻은 능동 사업 소득 (PE 또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 아닐 것).

PE로 부터 받은 소득과 비상장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세후 소득의 30%입니다. 30% 한도액과 재투자된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s)의 특정소득은
인도네시아내에서 간주배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로열티 및 자산의 양도 또는 매각에 따른 소득이 특정소득에
해당합니다. CFC는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상호간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CFC
소득의 범위는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CFC가 50%이상을 소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CFCs가 상호간 소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다수의 CFCs가 상호간 보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를 모두 포함).

CFC규정 적용을 위한 소유권의 기준은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회계기간의
종료시점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며, 납입 자본금 기준 또는 의결권을 포함한
납입 자본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CFC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동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이 예외됩니다.

Capital allowances 고정자산

Depreciation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취득 월부터 각 유형별로 감가상각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합니다. 각 유형별 해당자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내용연수 | 상각률 | |
|-------------------|------|-------|-------|
| | | 정액법 | 정률법 |
| 1. 건물 이외 | | | |
| Category 1 | 4년 | 25% | 50% |
| Category 2 | 8년 | 12.5% | 25% |
| Category 3 | 16년 | 6.25% | 12.5% |
| Category 4 | 20년 | 5% | 10% |
| 2. 건물 | | | |
| 상설 건물 | 20년* | 5%* | |
| 비상설 건물 | 10년 | 10% | |

Notes:

* 납세자는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장부에 따른 실제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주에 포함된 자산의 전체 목록은 재무부 장관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산업 (예 : 오일 및 가스, 조림, 플렌테이션 및 목축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Amortisation 상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무형자산(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사용권 등의 기한 연장비용과 영업권 포함)에는 다음 상각 방법이 적용됩니다.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카테고리 1, 2, 3, 4로 구분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합니다:
 - 일반적인 무형자산;
 - 법인설립 비용 및 법인증자와 관련된 비용;

- 상업활동개시 이전의 비용으로 경제적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비용.

내용연수에 가장 근접한 적절한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또는 납세자의 회계장부에 근거한 실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 b.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 비용, 광업권 (mining rights), 조림권 (forest concessions)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 (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채권권을 제외하고는 연간 상각비가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ssets arising from Tax Amnesty and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s 조세사면 및 자진 신고 제도로 인한 신규자산

2016-2017년에 시행된 조세사면제도 및 2022년 자진 신고제도(VDP)를 통해 신규로 등록된 자산은 세무 목적상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할 수 없습니다. 동 자산의 취득원가는 조세사면 또는 자진신고 제도 신청서에 신고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sset transfers 자산이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회사 자산의 매각의 경우 매각대가와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차손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은 당연 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 자산이 사업목적(예를 들어, 과세소득을 획득,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Revalu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재평가

루피아 장부기장을 하는 회사와 고정사업장은 국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Tax, 'DGT')의 승인을 얻어 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한 세무상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는 매 5년마다 가능하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업 관련자산(토지는 제외 가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산재평가 신청 전에 모든 납세의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승인 후 감가상각은 새로운 세무상 자산가치(승인된 가치)를 기준으로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잔존내용연수가 아닌 전체 내용연수에 대하여) 이루어 집니다.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가 자산의 기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재평가차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과세 되며 납세자가 재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평가 후 카테고리 1,2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은 적어도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 건물 및 카테고리 3,4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은 재평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에는 최초 재평가차액에 추가 세율이 부과되며 최종 분리과세 됩니다. 해당 추가 세율은 재평가 시점 법인세율에서 이미 납부한 10% 세율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정부의 의사나 정책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자산의 이전;
- b. 비과세 합병, 결합 또는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
- c.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의한 고정자산의 폐기.

Disallowded deductions 손금불산입 비용

다음의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a.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 b. 사업과 관련 없는 선물 및 기부. 단, 특정 종교적 기부는 예외;
- c. 다음을 제외한 충당금: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 (*Lembaga Penjamin Simpanan/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의 사업장 유지 및 폐쇄 준비금;
- d. 소득세 납부액;
- e. 조세 페널티(지연이자와 별과금 등);
- f. 이익 배당금;
- g.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은행예치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 h. 비과세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주식매입을 위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i. 파트너쉽이나 협회 등에서 출자에 대해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급여나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Limitation on interest deduction 이자 비용 공제 한도

이자비용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EBITDA 비율(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부채-자본 비율 등 기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 허용됩니다.

Losses 결손금

결손금의 이월기한은 최대 5년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특정 사업 및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 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의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병합 납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Profit distributions 이익배당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거주자인 수익자

인도네시아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으로 수취인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특정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에 재투자한 개인 거주자;
- 인도네시아 법인

재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 거주자의 배당금은 최대 10% 세율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b. 비거주자인 수익자

비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2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협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eemed profit margins 인정이윤과세

아래의 산업은 세무상 인정이윤에 따라 과세됩니다.

| | 매출액 대비 인정이익률 | 유효법인세율 |
|------------------------------------|-----------------|--------------------|
| 국내 해운업 | 4% | 1.20% ¹ |
| 국내 항공업 | 6% | 1.80% ¹ |
| 외국 해운 및 항공업 | 6% | 2.64% ¹ |
| 외국 석유·가스 시추업 | 15% | 3.3% ² |
| 특정 상공부(Ministry of Trade) 대표사무소 | 수출액의 1% | 0.22% ² |

Note:

1 유효법인세율 (effective income tax rate, 'EITR')은 재무부 (Minister of Finance, 'MoF')에서 인정이윤과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과거 법인세율인 30%를 적용하여 계산됨.

2 유효법인세율인 현행 법인세율인 22%를 적용하여 계산됨. 다만, 지점이윤세(Branch Profit Tax, 'BPT')율은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음.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특정산업과 영업

인도네시아에서는 특정 계약에 기초한 컨세션이 가능합니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s), Contract of Works (CoWs) 및 광업라이센스(*Izin Usaha Pertambangan/IUP*)가 이에 해당합니다.

Upstream 석유·가스 산업은 PCSs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PSCs는 효과적인 법인세 계산을 목적으로 원가보상(Cost Recovery)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 또는 보다 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을 가까운 “총괄분할(Gross Split)”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속·광물 및 석탄 회사는 CoW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공제가능 비용 및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에 있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W계약은 2009년 신광업법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최근의 광업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IUP concession에 따릅니다. 신광업법은 일반적인 조세법률과 규정이 광업 프로젝트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 IUPs에 대하여 일부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소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 보유한 경우;
2개 이상의 동일한 피투자회사에 각각 2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간의 관계 및 해당 피투자회사들간의 관계;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통제하에 있는 경우; 또는
-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배우자,
친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정상가격의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상가격의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세수익이나 손금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기본법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정상가격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Master file(통합 기업 보고서), Local file(개별 기업 보고서) 및 Country-by-Country Report(CbCR,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Master file과 Local file은 DGT가 요청하는 시점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Master file과 Local file의 요약문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CbCR문서의 통지서와 CbCR문서는 과세연도 종료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신고시 필요한 이전가격 관련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과 금액;
-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해당 방법을 선정한 근거;
- 회사가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였는지 여부.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불복은 국내 분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관련 조세협약상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조항에 따라 이종과세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와 국내 불복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MAP 관련 사안에 대한 조세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MAP 프로세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DGT는 결정 결과를 MAP 합의 내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협상 중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국세청이 납세자 또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향후에 발생할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대해 사전가격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s')를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PA의 결론은 세무조사를 수감하지 않는 과세연도(open years)에 잠재적으로 소급적용(roll-back)될 수 있으며, 사전가격합의(APA)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Sovereign Wealth Fund 국부 펀드

국부 펀드(*Lembaga Pengelola Investasi/LPI*)는 중앙 정부 자산의 펀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인도네시아 세무상 국부 펀드는 일반 소득세 대상이 되는 국내 법인 납세자로 간주되지만,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에 따른 취득세(*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와 수수료 비용 공제, 특정 대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 면제 등 몇 가지 특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국부 펀드와 협력하는 제3자는 배당 소득과 관련하여 특별 조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특정 요건의 총족 여부 및 배당금 수령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Normal tax rates 일반세율

대부분의 개인인 세무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은 다음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소득 | 세율 |
|--|-----|
| IDR 60,000,000 이하 | 5% |
| IDR 60,000,000 초과 - IDR 250,000,000 이하 | 15% |
| IDR 250,000,000 초과 - IDR 500,000,000 이하 | 25% |
| IDR 500,000,000 초과- IDR 5,000,000,000 이하 | 30% |
| IDR 5,000,000,000 초과분 | 35% |

Concessional tax rates 감면세율

퇴직금으로 2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됩니다:

| 과세소득 | 세율 |
|---|-----|
| IDR 50,000,000 이하 | - |
| IDR 50,000,000 초과 - IDR 100,000,000 이하 | 5% |
| IDR 100,000,000 초과 - IDR 500,000,000 이하 | 15% |
| IDR 500,000,000 초과분 | 25% |

정부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하는 정액 연금 (lump-sum pension)과 정부 사회보장공단 (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하는 노후저축 소득 (2년 내 지급 분)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됩니다:

| 과세소득 | 세율 |
|--------------------|----|
| IDR 50,000,000 이하 | - |
| IDR 50,000,000 초과분 | 5% |

3년 차 지급분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Main Personal Relief 주요 소득공제

거주자인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간 소득공제(*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가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항목 | IDR |
|---|------------|
| 납세자 본인 | 54,000,000 |
| 배우자 | 4,500,000 |
| 부양자 (최대 3인) | 4,500,000 |
| 의무비용공제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IDR 500,000/월) | 6,000,000 |
| 사회보장공단(<i>BPJS Ketenagakerjaan</i>)에 지급하는 노후연금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 전액 |
| 연금 납부액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IDR 200,000/월) | 2,400,000 |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로 최종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의 5억 루피아가 비과세 됩니다.

Tax residence 세무상 거주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도를 가진 개인.

Notes: 조세협약이 상기 규정에 우선함.

인도네시아 개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4년 동안은 인도네시아에서 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특정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특정 역외 소득에 대한 과세 참조).

12 개월 내에 183 일 미만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국외 영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외 과세 대상 또는 기타 국외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하여 *PPh 26*에 따라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Registration and filing 등록과 신고

소득공제금액(*PTKP*)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국세청에 세무등록을 하고 개인소득세의 확정신고(*Form 1770*)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투자소득·자본소득·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부채 상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CFC의 인도네시아 주주는 관련 CFC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CFC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설명한 3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세무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를 사용하는 단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소득이 *PPh 2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과 함께 과세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일 식별 번호의 시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거주자 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가 개인 납세 의무자의 *NPWP*로 사용됩니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자에 의해 원천징수 된다는 점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기타보상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PPh 21*과 *26*)를 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경감될 수 있음).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지급을 포함합니다:

- 정부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되는 연금지급;
- 퇴직금 지급;
- 사회보장제도 (*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하는 노후 저축;
- 서비스 수수료;
- 포상금 및 상금.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이 되며, 퇴직금 관리기구가 은행인 경우는 2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PPh 23*에 따른 15%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됩니다.

Benefits-in-kind (BIKs)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리후생, 특정 지역에 제공되는 비용,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 및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비용과 특정한도 내의 특정 유형의 비용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기관에서 관할합니다:

1. Social Security Agency for health insurance (*BPJS Kesehatan*) – 건강보험 관할
2. Social Security Agency for worker's social security (*BPJS Ketenagakerjaan*) – 상해보험, 노후저축, 사망보험, 실업보험 및 연금 관할

현행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통상 임금 대비 요율 | |
|---|-----------------------------|--------|
| | 고용주 부담 | 종업원 부담 |
| 산재보험 | 0.24-1.74% | - |
| 사망보험 | 0.3% | - |
| 해고 임직원에 대한 실업보험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 사망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재할당된 금액 | |
| 노후저축 | 3.7% | 2% |
| 건강보험*) | 4% | 1% |
| 연금보험**) | 2% | 1% |

*) 기준급여는 월별 IDR 12,000,000 한도로 계산합니다.

**) 최대 기준급여 한도는 매년 BPJS규정에 따라 개정됩니다.

모든 종업원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Saving Management of People's Housing 주택 저축 프로그램
주택 저축 프로그램(*Tabungan Perumahan Rakyat/Tapera*)은 근로자들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비용 자금을 제공합니다. Tapera 프로그램은 상호 협력의 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 기여금은 임금에 대한 특정 비율(예를 들어 고용주 0.5%, 직원 2.5 % 또는 프리랜서 소득의 3 %)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납입합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 고용주가 2027년 5월 19일까지 근로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General 일반

인도네시아 소득세는 주로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징수됩니다.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원천징수세는 해당 소득세법 조항 (*Pajak Penghasilan/PPh*)을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i) Article 21 income tax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동 원천세는 컨설턴트 또는 용역제공자와 같은 종업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적용됩니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 거주자는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i) Article 22 income tax (*PPh* 22): 수입 등에 대한 소득세

PPh 22는 다음의 특정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 No | 구매활동 | 세율 (%) | 과세표준 | Notes |
|----|---|--------|--------------------------|-------|
| 1 | a. 특정 최종 소비재의 수입 | 10 | | |
| | b. (a)를 제외한 기타 최종 소비재의 수입 | 7.5 | | |
| | c. 수입라이선스(<i>Angka Pengenal Impor/API</i>)를 통한 (a)와 (b)를 이외의 수입: | | 수입가격 (i.e., CIF 가격 + 관세) | |
| | i) 콩, 밀, 밀가루 | 0.5 | | |
| | ii) (i) 이외의 재화 | 2.5 | | |
| | d. API를 통하지 않은 (a)와 (b) 이외의 수입 | 7.5 | | |
| 2 | 경매 수입품 | 7.5 | 경매가격 | |
| 3 | 정부가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로 대금지급이 국고나 대행기관 (<i>Kuasa Pengguna Anggaran/KPA</i>)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1.5 | 판매가격 | 1 |

| No | 구매활동 | 세율 (%) | 과세표준 | Notes |
|----|--|--------|-----------------|-------|
| 4 | 정부소유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BUMN)과 그 자회사가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 1.5 | 판매가격 | 1, 3 |
| 5 | Pertamina와 그 자회사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 0.25 | 판매가격 | 2 |
| 6 | Pertamina와 그 자회사의 주유소가 아닌 민간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 0.3 | 판매가격 | 2 |
| 7 | 주유소가 아닌 경우의 유류구매 | 0.3 | 판매가격 | 2 |
| 8 | 가스연료 구매 | 0.3 | 판매가격 | 2 |
| 9 | 윤활류 구매 | 0.3 | 판매가격 | |
| 10 | 로컬 유통업체의 시멘트 구매 | 0.25 | 판매가격 | |
| 11 | 로컬 유통업체의 종이제품 구매 | 0.1 | 판매가격 | |
| 12 | 로컬 유통업체의 철강제품 구매 | 0.3 | 판매가격 | |
| 13 | 로컬 유통업체의 자동차제품 구매 | 0.45 | 판매가격 | |
| 14 | 로컬 유통업체의 의약제품 구매 | 0.3 | 판매가격 | |
| 15 | 독점에이전트(Agen Tunggal Pemegang Merek/ATPM),에이전트(Agen Pemegang Merek/APM) 및 일반 수입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 | 0.45 | 판매가격 | 4 |
| 16 | 제조업자 또는 수출자가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 및 어업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0.25 | 판매가격 | 1 |
| 17 | 광물협회협약(Mining Cooperation Agreements) 또는 CoW를 보유하지 아니한 수출자가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을 수출하는 경우 | 1.5 | Export value | |
| 18 | 광업허가(Izin Usaha Pertambangan/IUP)를 보유한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구매 | 1.5 | Selling prices | 1 |
| 19 | 금 장신구업체의 금 장신구(Gold Jewellery), 금괴(Gold Bar) 또는 기타 금 장신구의 판매 | 0.25 | Selling prices | 5 |
| 20 | 고급 사치품 구매 | 5 | 판매가격 | |
| 21 | PPh22 원천징수자인 2차 유통 사업자가 판매하는 핸드폰 선불카드(pulsa)와 SIM카드 스타터팩 | 0.5 | 판매가격 또는 인보이스 금액 | |

| No | 구매활동 | 세율 (%) | 과세표준 | Notes |
|----|--|------------|--------------------|-------|
|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화의 공급 b. 특정 서비스의 공급 c. 자산의 사용으로 기인되는 임대 또는 기타 소득 '기타 당사자(Other Party)가 정부 조달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Pengadaan Pemerintah/SIPP)를 통하여 정부 기관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세율이 적용. 대금지급은 소액 현금 또는 정부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함.' | 0.5 | 총 지급금액 | |
| 23 | 암호화(Crypto) 자산 판매자, E-commerce 부가세 징수자 또는 암호화 자산 채굴자가 가득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commerce 부가세 징수자가 암호화 자산을 물리적 트레이더인 경우 b. E-commerce 부가세 징수자가 암호화 자산의 물리적 트레이더가 아닌 경우 | 0.1 0.2 | 거래 금액 (부가세 제외) | |
| 24 | 암호화 자산과 관련하여 암호화 자산 채굴자가 가득한 수입 | 0.1 | 가득한 수입 (부가세 제외) | |

Notes:

- (3), (4), (16), (18)의 경우, PPh 22 징수자 (State Treasury, BUMN, etc.)는 반드시 특정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PPh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구매/사용에 대한 지불은 예외로 함:
 - 유류연료, 가스연료, 윤활류, 우편제품;
 - 수도와 전력;
 - PSC 계약자나 계약자의 본사 및 계약자의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석유, 가스 (upstream 부산물 포함); 그리고
 - Joint Operation Contract의 계약자로부터 공급받는 지열 전력.
 또한 (3)의 경우 IDR 2 million이하, (4)의 경우 IDR 10 million 이하 및 (16)의 경우 IDR 20 million이하에 해당하는 재화의 구매에 대하여는 PPh 22가 면제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자 또는 구매자는 수입 또는 구매하는 재화의 대가에 PPh 22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PPh 22는 법인/개인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을 구성합니다. 다만,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유통업체 및 에이전트가 구입하는 유류연료, 가스연료나 윤활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 및 어업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16)에 적용되어 이미 PPh 22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4. (20)에 따라 PPh 22가 적용되는 고급 사치 오토바이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5. 최종 소비자, 특정 소득이 있는 납세자, 소득세법 제22조 세금 면제 서한을 받은 납세자, Bank Indonesia에게 판매 및 디지털 금(Digital gold)의 현물 시장을 통한 판매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표준세율에 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iii) Article 4 (2) – final income tax (PPh Final): 최종분리과세 거주자인 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에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 최종분리과세의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
| 1. 토지건물 임대 | 10% ¹ |
| 2. 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 | 2.5% ² |
| 3. 건설 공사 (Construction work) | 1.75/ 2.65/ 4% |
| 4. 건설 컨설팅 (Construction consultation) | 3.5/6% |
| 5. 종합 건설 공사 (Integrated construction work) | 2.65/4% |
| 6. 예적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에 대한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 20% ³ |
| 7. 채권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 10% |
| 8.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각. | 0.1% |
| 동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주(Founder)는 상장시 시장가격의 0.5%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 |
| 9. 복권당첨금 | 25% |
| 10. 연간 매출액이 IDR 4.8 billion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소득(단, 고정사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함) | 0.5% ⁴ |
| 11. 국부펀드와 협력하는 특정 비거주자가 받는 특정 배당금 | 7.5% |

Notes:

1. 토지의 소유자가 BOT계약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부동산을 부동산 투자 펀드(*Kontrak Investasi Kolektif – Dana Investasi Real Estate/KIK-DIRE*)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수출자 자금(*Devisa Hasil Ekspor*)를 재원으로 하는 정기예금(time deposit)에서 수령하는 이자의 경우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납세자가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특정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iv) Article 23 income tax (*PPh 23*): 특정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거주자인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특정한 다음 소득에 대하여는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의 15% 또는 2%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a.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1. 배당(이익 배당 참조);
2.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3. 로열티;
4. 포상금 및 상금.

b.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2%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1.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임대
2.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경영서비스(management service), 컨설팅서비스(consultation service) 및 기타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Article 21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적용이 예외됩니다.

(v) Article 26 income tax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거주자인 납세자, 단체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a. 총액기준:

1. 배당;

2.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10%이며 경감될 수 있음;
3.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4. 서비스,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수수료;
5. 상금 및 포상금;
6. 연금과 다른 정기적 지급;
7. 스왑 프리미엄과 다른 해지거래;
8. 채무면제이익;
9.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이익.
- b.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기준:

| | ENI | 유효세율 |
|--|-----|------|
|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보험 프리미엄: | | |
| • 피보험자 | 50% | 10% |
| •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 10% | 2% |
| • 인도네시아 재보험회사 | 5% | 1% |
| 비상장 인도네시아 회사 주식의 매각 | 25% | 5% |
|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소재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의 매각으로, 도관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회사나 고정사업장 보유를 위한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 |
| 고가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및 경비행기 매각으로 매각금액이 IDR 10 million 를 초과하는 경우 | 25% | 5% |

수취인이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국제 조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 방지협약

인도네시아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조세협약)은 협약 상대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수취하는 용역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와 배당·이자·로열티·지점이윤세에 대한 원천세율의 경감을 통해 조세혜택을 부여합니다. 용역 수수료에 대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수취하는 외국 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외국 거주자는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최소한 소득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의 거래상대방을 통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거주자증명원 (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서식 혹은 조세협약 상대국에서 정한 서식(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외국 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하기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테스트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법인(entity)은 법인의 설립이나 거래의 실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
2. 법인은 법인의 설립이나 거래의 실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법적 형태와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
3. 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경영진이 있으며, 동 경영진은 독립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4. 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산 이외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5. 법인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자격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6. 법인은 인도네시아를 원천으로 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로열티 소득 이외에 활발하게 운영중인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7. 거래의 목적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직접/간접적으로 얻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수익의 형태가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로열티 소득인 경우에 관련 조세조약에서 요구하는 경우 외국거주자는 반드시 다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테스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대리인, 명의대여자(nominee) 및 도관(condui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법인은 소득, 자산 및 소득발생을 위한 권리에 대한 지배권과 처분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 법인 수익의 50% 이상을 타인에 대한 의무의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법인은 소유한 자산, 자본금 및 부채에 대하여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 법인은 수령한 소득을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계약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조세협약상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Notes | Dividends | | | | Branch Profit Tax |
|--------------------|-----------|----------------------|----------|-----------|-------------------|
| | Portfolio | Substantial holdings | Interest | Royalties | |
| 1. Algeria | 15% | 15% | 15/0% | 15% | 10% |
| 2. Armenia | 15% | 10% | 10/0% | 10% | 10% |
| 3. Australia | 15% | 15% | 10/0% | 15/10% | 15% |
| 4. Austria | 15% | 10% | 10/0% | 10% | 12% |
| 5. Bangladesh | 15% | 10% | 10/0% | 10% | 10% |
| 6. Belarus | 10% | 10% | 10/0% | 10% | 10% |
| 7. Belgium | 15% | 10% | 10/0% | 10% | 10% |
| 8. Brunei | 15% | 15% | 15/0% | 15% | 10% |
| 9. Bulgaria | 15% | 15% | 10/0% | 10% | 15% |
| 10. Cambodia | 1,5 | 10% | 10/0% | 10% | 10% |
| 11. Canada | | 15% | 10/0% | 10% | 15% |
| 12. China | 2 | 10% | 10/0% | 10% | 10% |
| 13. Croatia | 10% | 10% | 10/0% | 10% | 10% |
| 14. Czech Republic | 15% | 10% | 12.5/0% | 12.5% | 12.5% |
| 15. Denmark | 20% | 10% | 10/0% | 15% | 15% |
| 16. Egypt | 15% | 15% | 15/0% | 15% | 15% |

| Notes | Dividends | | | Interest | Royalties | Branch Profit Tax |
|----------------------|-----------|----------------------|-------|----------|-----------|-------------------|
| | Portfolio | Substantial holdings | | | | |
| 17. Finland | 15% | 10% | | 10/0% | 15/10% | 15% |
| 18. France | 15% | 10% | | 15/10/0% | 10% | 10% |
| 19. Germany | 1 | 15% | 10% | 10/0% | 15/10% | 10% |
| 20. Hong Kong | | 10% | 5% | 10/0% | 5% | 5% |
| 21. Hungary | 3 | 15% | 15% | 15/0% | 15% | 20% |
| 22. India | 1 | 10% | 10% | 10/0% | 10% | 15% |
| 23. Iran | | 7% | 7% | 10/0% | 12% | 7% |
| 24. Italy | | 15% | 10% | 10/0% | 15/10% | 12% |
| 25. Japan | | 15% | 10% | 10/0% | 10% | 10% |
| 26. Jordan | 3 | 10% | 10% | 10/0% | 10% | 20% |
| 27. Korea (North) | | 10% | 10% | 10/0% | 10% | 10% |
| 28. Korea (South) | 2 | 15% | 10% | 10/0% | 15% | 10% |
| 29. Kuwait | | 10% | 10% | 5/0% | 20% | 10/0% |
| 30. Laos | | 15% | 10% | 10/0% | 10% | 10% |
| 31. Luxembourg | 1 | 15% | 10% | 10/0% | 12.5% | 10% |
| 32. Malaysia | 4, 5 | 10% | 10% | 10/0% | 10% | 12.5% |
| 33. Mexico | | 10% | 10% | 10/0% | 10% | 10% |
| 34. Mongolia | | 10% | 10% | 10/0% | 10% | 10% |
| 35. Morocco | | 10% | 10% | 10/0% | 10% | 10% |
| 36. Netherlands | | 10/15% | 5% | 10/5/0 % | 10% | 10% |
| 37. New Zealand | 3 | 15% | 15% | 10/0% | 15% | 20% |
| 38. Norway | | 15% | 15% | 10/0% | 15/10% | 15% |
| 39. Pakistan | 1 | 15% | 10% | 15/0% | 15% | 10% |
| 40. Papua New Guinea | 1 | 15% | 15% | 10/0% | 10% | 15% |
| 41. Philippines | | 20% | 15% | 15/10/0% | 15% | 20% |
| 42. Poland | | 15% | 10% | 10/0% | 15% | 10% |
| 43. Portugal | | 10% | 10% | 10/0% | 10% | 10% |
| 44. Qatar | | 10% | 10% | 10/0% | 5% | 10% |
| 45. Romania | | 15% | 12.5% | 12.5/0% | 15/12.5% | 12.5% |
| 46. Russia | | 15% | 15% | 15/0% | 15% | 12.5% |
| 47. Serbia | | 15% | 15% | 10/0% | 15% | 15% |
| 48. Seychelles | 3 | 10% | 10% | 10/0% | 10% | 20% |
| 49. Singapore | | 15% | 10% | 10/0% | 8/10% | 10% |
| 50. Slovakia | | 10% | 10% | 10/0% | 15/10% | 10% |
| 51. South Africa | | 15% | 10% | 10/0% | 10% | 10% |
| 52. Spain | | 15% | 10% | 10/0% | 10% | 10% |
| 53. Sri Lanka | | 15% | 15% | 15/0% | 15% | 20% |
| 54. Sudan | | 10% | 10% | 15/0% | 10% | 10% |
| 55. Suriname | | 15% | 15% | 15/0% | 15% | 15% |
| 56. Sweden | | 15% | 10% | 10/0% | 15/10% | 15% |
| 57. Switzerland | 1 | 15% | 10% | 10/0% | 10% | 10% |

| Notes | Dividends | | | Interest | Royalties | Branch Profit Tax |
|------------------------------|-----------|----------------------|-------|----------|-----------|-------------------|
| | Portfolio | Substantial holdings | | | | |
| 58. Syria | 10% | 10% | 10/0% | 20/15% | 10% | |
| 59. Taiwan | 10% | 10% | 10/0% | 10% | 5% | |
| 60. Tajikistan | 10% | 10% | 10/0% | 10% | 10% | |
| 61. Thailand | 20/15% | 20/15% | 15/0% | 15% | 20% | |
| 62. Tunisia | 12% | 12% | 12/0% | 15% | 12% | |
| 63. Turkey | 15% | 10% | 10/0% | 10% | 10% | |
| 64. Ukraine | 15% | 10% | 10/0% | 10% | 10% | |
| 65. United Arab Emirates | 1 | 10% | 10% | 7/0% | 5% | 5% |
| 66. United Kingdom | 15% | 10% | 10/0% | 15/10% | 10% | |
| 67. United States of America | 15% | 10% | 10/0% | 10% | 10% | |
| 68. Uzbekistan | 10% | 10% | 10/0% | 10% | 10% | |
| 69. Venezuela | 1 | 15% | 10% | 10/0% | 20% | 10% |
| 70. Vietnam | 15% | 15% | 15/0% | 15% | 10% | |
| 71. Zimbabwe | 1,5 | 20% | 10% | 10/0% | 15% | 10% |

Notes:

-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된 기술지원료, 경영지원료 및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는 5%, 독일은 7.5%, 캄보디아·인도·룩셈부르크·파푸아뉴기니·베네수엘라는 10%, 파키스탄·짐바브웨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국제선 항공 또는 선박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상호면제됨.
- 조세협약이 지점이윤세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20%를 적용함.
- The 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에 따른 Labuan offshore 회사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수정된 협약은 2011년 10월 20일에 서명되었고 2017년 8월 4일에 비준되었지만 비준 문서 교환이 보류 중임.
- 조세협약이 비준되었으나 비준서류의 교환 보류로 빌호되지 않음.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고정사업장 기간적용 기준

인도네시아내에서 특정기간을 초과하여 특정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세협약에 규정된 특정 활동에 대한 특정 기간 요약표입니다:

| | Bldg. Site Construction | Installation | Assembly | Supervisory Activities | Other Services |
|------------|-------------------------|--------------|----------|------------------------|----------------|
| 1. Algeria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 2. Armen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20 days |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 | Bldg. Site Construction | Installation | Assembly | Supervisory Activities | Other Services |
|--------------------|--------------------------------|---------------------|-----------------|-------------------------------|-----------------------|
| 3. Australia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 4. Austr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5. Bangladesh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91 days |
| 6. Belaru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20 days |
| 7. Belgium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8. Brunei | 183 days | 3 months | 3 months | 183 days | 3 months |
| 9. Bulgar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20 days |
| 10. Cambodia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 11. Canada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 12. Chin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13. Croat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14. Czech Republic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15. Denmark | 6 months | 3 months | 3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16. Egypt | 6 months | 4 months | 4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17. Finland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18. France | 6 months | - | 6 months | 183 days | 183 days |
| 19. Germany | 6 months | 6 months | - | - | - |
| 20. Hong Kong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 21. Hungary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4 months |
| 22. India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91 days |
| 23. Ira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83 days |
| 24. Italy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25. Japan | 6 months | 6 months | - | 6 months | - |
| 26. Jorda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 month |
| 27. Korea (North) | 12 months | 12 months | 12 months | 12 months | 6 months |
| 28. Korea (South)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29. Kuwait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 30. Lao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31. Luxembourg | 5 months | 5 months | 5 months | 5 months | - |
| 32. Malays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33. Mexico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91 days |

| | Bldg. Site Construction | Installation | Assembly | Supervisory Activities | Other Services |
|----------------------|-------------------------|--------------|----------|------------------------|----------------|
| 34. Mongol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35. Morocco | 6 months | --- | 6 months | 6 months | 60 days |
| 36. Netherland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37. New Zealand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38. Norway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39. Pakistan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 |
| 40. Papua New Guinea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 41. Philippines | 6 months | 3 months | 3 months | 6 months | 183 days |
| 42. Poland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20 days |
| 43. Portugal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83 days |
| 44. Qatar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45. Roman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4 months |
| 46. Russia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 |
| 47. Serb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48. Seychelle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49. Singapore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6 months | 90 days |
| 50. Slovak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91 days |
| 51. South Afric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20 days |
| 52. Spain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3 months |
| 53. Sri Lanka | 90 days | 90 days | 90 days | 90 days | 90 days |
| 54. Suda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55. Suriname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91 days |
| 56. Swede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57. Switzerland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 |
| 58. Syri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83 days |
| 59. Taiwa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20 days |
| 60. Tajikista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61. Thailand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62. Tunisia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3 months |
| 63. Turkey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83 days |
| 64. Ukraine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4 months |

| | Bldg. Site Construction | Installation | Assembly | Supervisory Activities | Other Services |
|------------------------------|-------------------------|--------------|----------|------------------------|----------------|
| 65. United Arab Emirate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66. United Kingdom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183 days | 91 days |
| 67. United States of America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120 days |
| 68. Uzbekistan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69. Venezuela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 |
| 70. Vietnam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3 months |
| 71. Zimbabwe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6 months | 183 days |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조세정보 교환협정

인도네시아는 San Marino(협정은 체결되었으나, 비준서류의 교환이 지연됨), Bermuda, Guernsey, Isle of Man, Jersey 및 Bahamas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체결하였습니다.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조세행정공조조약

인도네시아는 2011년 11월 3일에 조세행정공조조약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MAATA')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비준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하기의 자동정보 교환과 관련한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하였습니다:

1. 표준보고서(Common Reporting Standard)를 이용한 재무정보(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2. 이전가격문서의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과 관련한 다자간조약

인도네시아는 2017년 6월 7일자로 상기의 다자간 조약을 서명하였으며, 2019년 11월 13일자 비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4월 28일에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OECD(다자간 조약의 보관소)에 통지하였습니다. 동 다자간 조약은 2020년 8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까지 인도네시아는 60개의 조세 조약을 마련하였으며, 각 관할권의 통지내용에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자간 조약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llar Two 도입에 따라 아래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

-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 –
인도네시아는 2024년 12월 31일 GloBE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세법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이 각각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격 소재지 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규칙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원천지국 과세 규칙(Subject-to-Tax Rule, STTR) – 인도네시아는 Pillar Two STTR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 9월 19일에 다자간 협정(MLI)을 체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정적으로 29개의 조세 조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비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US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US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인도네시아는 FATCA 이행을 위하여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1의 서명에 동의하였습니다.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General 일반

부가가치세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custom area)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이동이나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events)에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b.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 c.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d. 과세지역 밖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e. 과세지역 밖의 용역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f.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무형재화의 수출;
- g.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부가가치세 의무는 연간 공급가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계약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한 권리의 양도;
- b. 할부구매 (hire-purchase)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c. 중개상에게 또는 경매를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d.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사용 및 무상제공;
- e. 법인 청산 시 잔존 과세대상 재화로, 판매목적이 아닌 재고 혹은 기타자산;
- f.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를 들어, 지점간 또는 본지점간),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신고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관련규정: 국세청장시행규칙 No. PER-19/PJ/2010];
- g. 샤리아 금융구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비과세재화 및 서비스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 및 서비스, 일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재화

- 호텔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 등으로 객장에서 소비되거나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지방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캐터링 음식과 음료를 포함;
- 화폐, 유가증권 및 정부 외화 준비금 목적의 금고.

비과세용역

- 종교 서비스;
- 일반적인 정부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 호텔, 주차, 캐터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

세율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2%이나, 정부는 '기타 가액으로 산출된 과세표준 (Dasar Pengenaan Pajak, DPP Nilai Lain)'에 11/12을 곱하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11% 세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12%의 실질 부가가치세율은 일부 사치품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은 의회 협의 및 정부령(GR) 발행을 통해 향후 15%로 인상되거나 5%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 대상 유무형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서비스 수출에 대한 영세율에는 특정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율에 특정 비율이나 공식을 적용하여 유효 부가가치세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본 제도에 따른 대상 거래 및 특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비보조금 대상 액화석유가스(LPG)가 유통 대리점 또는 하위 유통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 1.1/101.1;
- b. 특정 농산물: 1.1%;
- c. 중고 자동차: 1.1%;
- d. 포장 배송 서비스: 1.1%;
- e. 커미션 기반이 아닌 여행사 또는 여행 패키지 서비스 제공: 1.1%;
- f. 화물 운송 서비스(운임 포함): 1.1%;
- g. 종교 여행 서비스 중 비종교적인 장소(관광지)로의 여행이 포함된 경우:
 - 종교 여행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 비종교적 여행 부분의 1.1%;
 - 종교 여행 부분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총 서비스 가격의 0.55%;
- h. 커미션 기반이 아니며 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바우처를 이용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 배포와 관련된 거래 결제 서비스, 고객 충성도/리워드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1.1%;
- i. 채권자가 압류 자산을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1%;
- j. 금 장신구 및 기타 장신구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 거래 유형 및 당사자에 따라 0%에서 최대 1.65%;
- k. 보험 대리점 서비스: 1.1%;
- l. 보험/재보험 증개 서비스: 2.2%;
- m. 자가 건설 활동: 2.2%;
- n. 전자상거래 VAT 징수자(*Pelaku 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PPMSE*)가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 암호화폐 거래 가치의 0.11%;
- o. PPMSE가 암호화폐 거래자가 아닌 경우: 암호화폐 거래 가치의 0.22%;
- p. 암호화폐 자산 채굴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자산 가치의 1.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관련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대부분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래 금액에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표준으로 *DPP Nilai Lain*을 사용하는 특별 규칙이 존재하며, 12%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DPP Nilai Lain*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자가 사용 또는 무료 증정용: 판매 가격에서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금액의 11/12;
- b. 영화: 영화 한 편당 평균 가격의 11/12;
- c. 회사 파산 시 판매 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잔여자산 또는 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의 무료 증정: 시장 가치의 11/12;
- d. 중개 상인을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납품: 중개인과 구매자 간 합의된 가격의 11/12;
- e. 경매 담당자를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납품: 경매 낙찰 가격의 11/12;
- f. 아웃소싱된 근로자의 급여 부분이 VAT 인보이스에 구분 기재된 경우: 총 서비스 금액에서 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12;
- g. 고객에게 제공되는 비방송 광고 서비스로, 방송 서비스 부분이 VAT 인보이스에 구분 기재된 경우: 광고 서비스 요금의 11/12;
- h. 수입 영화: 영화 한 편당 12백만 인도네시아 루피아(IDR)의 11/12;
- i. 선불 전화 크레딧 및 SIM 카드 스타터 패키지의 인도:
 - 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1차 유통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청구금액의 11/12;
 - 2차 유통업체가 타 유통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타 유통업체에 청구된 금액의 11/12;
 - 2차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의 11/12;
- j. 전력 토큰 배급업체에 의한 거래 결제 서비스: 거래 수수료/관리 수입 또는 순수익(지역세 및 인지세 제외)의 11/12;
- k. 바우처를 이용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 배포 관련 거래 결제 서비스, 고객 충성도/리워드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커미션/수수료(커미션 기반인 경우) 또는 순수익(커미션 기반이 아닌 경우)의 11/12;
- l.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 내 기업이 FTZ에서 가공하지 않은 비자치품 또는 원자재를 세관 구역 내 다른 장소(Tempat Lain di Dalam Daerah Pabean, TLDDP)에 위치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세(Luxury-goods Sales Tax)를 제외한 관세 및 기타 과세표준의 11/12;
- m. TLDDP에서 FTZ로 일시적으로 반입되거나 FTZ에서 반출된 비사치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재반출/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시장 가치의 11/12;
 - n. 정부 지정 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특정 비보조금 대상 액화석유가스(LPG): 소매 가격의 0.825배;
 - o. 담배 제품: 소매 가격의 9.9%;
 - p. 농업 부문을 위한 특정 비료:
 - 보조금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보조금 금액의 0.825배;
 - 비보조금 부문: 최대 소매 가격의 0.825배;
 - q. Joint Operation(JO) 구성원이 JO에게 공급하는 경우: JO 약정에 명시된 각 JO 구성원의 기여금의 11/12.

VAT reporting 부가세 신고

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PKP*)로 지정된 회사와 개인은 매월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되며, 따라서 여러 사업장 (branches)을 보유한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세무서 (*Kantor Pelayanan Pajak/KPP*)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과세대상재화의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서면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총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대상재화의 내부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일부 특정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 총괄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대로 총괄신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Input-output mechanism 매입매출 정산구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며, 이는 판매자의 관점에서 매출 부가세가 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구매자의 관점에서 매입 부가세입니다. 해당 재화 및 용역이 구매자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 기간내 총 매출세액이 총 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해당 차액을 다음달 말 부가세 신고기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총매입세액이 총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달 납부할 금액에서 이월공제하거나 매년말 연도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mport and self-assessed VAT 수입 및 자가징수 부가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외국의 과세대상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소비에 적용되는 자가징수 (self-assessed) 부가가치세 역시 표준 매입매출 정산구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는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를 VAT 징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VAT 참조). 부가세 징수자가 지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 매입자/수입자는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VAT를 지불해야 합니다.

VAT Collector 부가세 징수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징수자 (VAT Collector)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매출매입 정산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현재 재무부 (State Treasury), 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BUMN*)과 그 자회사, 오일 및 가스 섹터의 PSC (Product Sharing Contract)회사 및 특정 광업 허가를 보유한 광업회사 입니다. 명칭 그대로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 대신 정부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Overpayment Posi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Crediting input VAT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기간(월)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응되어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즉, VAT 대상 재화/서비스를 공급 또는 수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생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산전 매입세액의 일반적인 기한은 3년이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제조 부문과 영업부문은 각각 5년과 6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업자가 되기 전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세무 조사 중에 발견된 부가가치세 또는 세금 추징을 통해 징수된 매입 부가가치세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금 계산서의 유효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b. 매입자의 이름과 주소 및 식별번호(*ID number*);
- c. 재화와 용역의 종류, 수량, 공급가액 및 할인액;
- d. 부가가치세 금액;
- e.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Luxury-goods Sales Tax*, 'LST') 금액;
- f. 세금계산서 코드, 일련번호 및 발행일자; 그리고
- g.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이름과 서명.

상기 최소 필요정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과세사업자(*PKP*)는 전자 형식의 세금계산서 (*electronic Faktur*

Pajak le-FP)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매업 사업자의 경우 위 b와 g 항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
- b.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금을 지급한 때;
- c. 단계별로 진행되어 일부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또는
- d. 재무부장관령에 의해 규정되는 다른 경우.

VAT refunds 부가세 환급

매 회계연도 말,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 환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세 세무조사를 근거로 환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2개월 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가세 환급 세무조사시 세무서로 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 1개월 내에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후에 제출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계산 시,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세금 조기 환급 관련 챕터 참고).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혜택(VAT Facility)

특정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수입 및 사용에 대하여는 부가세 면제 또는 미징수의 형태로 부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재화 및 서비스는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정부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특정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및 공급

- a. 소아마비 백신 및 COVID-19의 대응을 위한 백신;
- b. 특정 교육 서적 및 종교 서적;
- c. 국가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특정 기관으로부터 받는 과세대상 재화.

특정 과세대상 서비스의 공급

- a. 예배 장소 건설을 위한 건설 서비스;
- b. 국가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특정 서비스.

특정 전략적 재화의 수입

- a.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비 및 기계장치;
- b. 해양 및 어업 분야에서 생산하는 재화;
- c. 무두질 하지 않은 원피;
- d. 특정 항목의 가축;
- e.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축산 및 어업의 종자 및 묘목;
- f. 동물사료(애완동물 사료의 경우 제외);
- g.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양어 사료;
- h. 동물사료 및 양어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특정 원재료;
- i. 과립 및 바의 은 수공예 원료;
- j. 국방목적의 무기;
- k. 군대에서 사용하는 국경 자료 및 항공사진 제공을 위한 특정 장치 및 부속품;
- l. 수입관세 면제가 부여된 특정 기관으로부터 수입관 대통령 특수차량;
- m. 수입관세가 면제된 공공장소 및 자연보호를 위한 재화;
- n. 대중이 매우 필요로 하는 특정 생필품;
- o. 특정 백크리스탈 사용 설탕;
- p. 광업/시추활동에서 생산된 재화 (석탄광산 재품은 제외);
- q.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천연가스;
- r. 수입관세 면제가 적용된 정부가 수입하는 공공 목적의 재화;
- s. 수입관세 면제가 부여된 특정 의약품;

t. 수입관세 면제가 부여된 인체 치료 재료, 혈액형 검사 및 조직 재료.

특정 전략적 재화의 공급

- a. 상기에서 언급한 (a) – (i), (k) 및 (n) – (q)와 유사한 재화;
- b. 특정 조건으로 파이낸싱한 공공 아파트;
- c. 공공 주택, pondok boro, 학생기숙사, 특정 근로자 주택;
- d. 전력 (연결 및 가입비 포함). 단, 6,600 VA를 초과하는 전력을 보유한 주택은 제외;
- e. 청정수;
- f. 전투장비, 특수한 육상 운송장비, 레이다 및 이에 관련한 부품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
- g. (f)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특정 기관으로부터 수입된 경우.

특정 전략적 서비스의 공급 및 사용

- a. 의료 건강 서비스;
- b. 공공서비스;
- c. 우편 배송 서비스;
- d. 금융서비스;
- e. 보험서비스;
- f. 교육서비스;
- g. 비광고 방송서비스;
- h. 육송 및 해상 공공 운송 서비스, 외국 항공 운송 서비스의 국내 연결서비스;
- i. 노동 서비스;
- j. 코인을 사용하는 공공 전화 서비스;
- k. 우편환 주문을 통한 환전 서비스;
- l. 공공 아파트 및 주택의 임대서비스;
- m. 국경 데이터 및 항공사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VAT on e-commerce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공급되는 특정 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판매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해외 전자 상거래 마켓플레이스와 국내 전자 상거래 마켓플레이스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활동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VAT 징수자로 지정됩니다.

- 인도네시아 고객과의 거래 금액이 1년에 6억 루피아 또는 월 5 천만 루피아를 초과; 또는
-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가 12개월 동안 12,000 사용자 또는 한 달에 1,000명의 사용자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된 VAT 징수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Luxury-goods Sales Tax 사치품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사치품 소비세(L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치품 소비세는 재화의 수입 또는 제조업자에 의한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사치품 소비세는 매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되어야 하며 해당 재화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치품 소비세 관련 내용 요약표는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약표 상의 특정 물품은 용량, 크기 또는 가격 등의 요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사용하여 Customs Book을 참고해야 합니다.

현행 부가세 및 사치품소비세법에 따르면, 소비세율은 2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비세율은 10%~95%입니다.

| Group | LST Rates (%) | | | | | | | | | |
|--|---------------|----|----|----|----|----|----|----|----|----|
| | 10 | 12 | 15 | 20 | 25 | 30 | 40 | 50 | 75 | 95 |
| Luxury residences such as luxury houses, apartments, condominiums, town houses and the like | ● | | | | | | | | | |
| Balloons, dirigibles, and other un-powered aircraft | | | | | ● | | | | | |
| Shortguns and other arm cartridges, firearms and other arms, except for the state purposes | | | | | | ● | ● | | | |
| Aircraft other than those for the state or commercial air-transport purpose | | | | | | | ● | | | |
| Luxury cruises, except for the need of the state and public transport as well as yacht for tourism | | | | | | | | ● | | |
| Motor vehicles | ● | ● | ● | ● | ● | ● | ● | ● | ● | ● |

Carbon Tax 탄소세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며, 다음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 a. 일정 수준의 탄소 배출을 초래하는 활동을 수행; 또는
- b. 탄소를 함유한 상품을 구매.

탄소 배출

일정 수준의 탄소 배출은 탄소세의 부과 대상이 되며, 최소한 다음의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탄소세가 책정됩니다.

- a. 국내 탄소 시장의 kg CO2e(이산화탄소 등가물 배출량 kg)당 탄소가격; 또는
- b. IDR 30/kg CO2e.

탄소세는 탄소 배출 거래("Cap and Trade mechanism", 배출권거래제)을 통해 계산됩니다. 배출권 거래를 통한 탄소세 감면 외에도, 환경 부문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매커니즘(현재 미정)도 허용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에는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탄소세는 각 산업의 상황과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소세 납세자는 탄소 배출 내역을 기록하고, 탄소세를 자진 납부하며 연간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탄소 함유 제품의 구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탄소 함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탄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탄소세 징수자로서 탄소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탄소세 징수자는 관련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탄소세를 월별로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Customs and Excise 관세와 소비세

Import Duty 수입관세

수입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가격에 0%-150%를 적용합니다. 관세가격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Group | Goods | Rate (%) |
|---|---|------------------------------|
| | Passenger & commercial | 5 to 50 |
| Automobiles | Certain vehicles under battery-based electric motorised programme for road transportation | 0* |
| Automobile components | Incompletely Knocked Down | 0 to 7.5 |
| | Part by Part | 0 to 10 |
| Vessels | Ship,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 0 to 5 |
| Aircraft | Balloons, helicopters, aeroplanes, parachutes, and aircraft launching gear | 0 |
| Electronic goods | Camera, refrigerator, cellular phone and others | 0 to 20 or IDR 21,450/minute |
| Textile, textile products and accessories | Bags, harnesses, apparels, and clothing accessories, etc | 0 to 35 |
| Beverages, ethyl alcohol & alcoholic drinks | Ethyl alcohol, juice, beer, wine, spirits and other beverages | 5 to 150 or, IDR 14,000/ltr |
|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 Odoriferous substances | 5 to 150 |
| Agricultural products | Animal & vegetable products | 0 to 20 or, IDR 450/kg |
| Furniture | Bedding, mattresses, lamp and lighting fitting, and others | 0 to 20 |
| Toys | Toys, games and sport requisite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5 to 20 |
| Plastic | Plastic and article thereof | 0 to 25 |
| Rubber | Rubber and article thereof | 0 to 15 |
| Wood | Wood and article thereof | 0 to 25 |
| Steel | Steels and article thereof | 0 to 20 |

| Group | Goods | Rate (%) |
|-------|---|----------|
| Other | Chemicals, pharmaceutical products, software, works of art, arms and ammunition, musical instrument, and others | 0 to 40 |

* 2025년 12월 31일까지 0% 관세율이 부과됨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사회문화적 이유로 특정 산업과 재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입관세율 이외에도 특정 품목에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배상금 및 보복관세율과 같은 추가적인 수입관세율이 있습니다.

ASEAN duty rates 아세안 국가간 수입관세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간 직접 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재화(원산지 기준을 요건에 따라 다름)에 대하여는 일정한 관세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SEAN 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을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습니다.

ASEAN 국가간 무역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에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greements on preferential duty rates 수입관세 인하 조약

인도네시아는 타 국가들과 수입관세 인하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약 및 경제 파트너쉽 조약을 통하여 상호간 또는 지역간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Import duty relief/exemption/deferral 수입관세 경감/면제/유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 투자자에게 수입관세 경감·면제 및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와 같은 다른 조세 혜택과 함께

부여됩니다. R&D활동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는 특정 기업의 경우 수입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port Duty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관세가격 (*ad valorem*)에 특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특정 통화로 관세율/물량을 특정하여 산출합니다. 관세가격은 통상부(Ministry of Trade)에서 설정한 가격 벤치마크와 일관되게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이 결정합니다.

| Group | Goods | Rate |
|--|--|----------------------------|
| Leather and wood | Leather made from certain furry animals, veneer, chip wood, processed wood | 2% to 25% |
| Cocoa beans | | 0% to 15% |
| Palm fruit, Crude Palm Oil (CPO) and its derivative products | Fresh fruit bars, CPO, Crude Palm Kernel Oil (CPKO), hydrogenated CPO/CPKO, Palm Fatty Acid Distillate (PFAD), biodiesel | USD 0 to 431 / Metrics Ton |
| Refined mineral products | Certain metals | 5% to 7.5% |
| Certain mineral products | Certain nickel and bauxite | 10% |

Excise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통제되어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알코올 제품과 담배 제품입니다.

| Group | Rate |
|---------------------------|--|
| Ethyl alcohol | IDR 20,000/litre |
| Alcoholic drink | IDR 16,500/litre to IDR 152,000/litre |
| Ethyl alcohol concentrate | IDR 1,000/gram or IDR 228,000/litre |
| Tobacco products | IDR 10 to IDR 110,000/stick or gram or millilitre for certain tobacco products |

Tax Concessions 조세혜택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세혜택은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혜택의 시행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기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조건과 적용절차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ncome Tax Concessions 소득세 혜택

Tax Holiday 텍스 할리데이

재무부는 투자 규모에 따라 상업 생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년 – 20년 동안 50% 또는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후속하는 2년 동안 투자규모에 따라 25% 또는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조세감면 혜택은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에 속하는 기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창출 및 외부 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현행 규정상 동 법인세 감면혜택은 규정에 명시된 특정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코드(*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KBLI*)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규정된 KBLI 이외의 사업분야는 선도 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한 자체 평가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 조세감면 혜택의 신청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OSS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 후에 재무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텍스 할리데이의 제안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동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Pillar Two 규정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Global Minimum Tax) 대상이 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세금(Top up Tax)이 부과됩니다. 해당 추가 세금은 2024년 10월 9일 이전에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Tax Allowance 투자소득공제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조세 혜택을 특정 사업 또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투자금액의 30% 까지 소득공제(단, 6년간 투자된 자산이 이전되지 않아야 함);
- 가속상각 인정;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동 혜택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하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 투자 법인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는 법인;
- 높은 수준의 로컬 컨텐츠를 소비하는 법인.

일반적으로 OSS를 통해 신청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Super Deduction Facility 특정산업 세제 혜택

특정 산업에 투자 또는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 노동집약산업의 세제 혜택; 고정자산(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포함)의 형태로 투자된 금액의 60%금액까지 특정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순손익에서 공제가능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개발(human resources) 분야의 세제혜택; 동 분야에 지출된 금액의 200% 금액까지 총수익에서 공제가능

- 인도네시아 내에서 특정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세제혜택; 동 분야에 지출된 금액의 300% 금액까지 총수익에서 공제가능.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상장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3%p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발행 주식수의 최소 40%이상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IDX)에 상장되어야함.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및 자사주는 계산 제외;
- 총발행주식의 5%미만을 보유한 300명 이상의 개인에게 분산되어야 함.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과세기간 중 최소한 183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혜택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ax neutral mergers 비과세 합병

사업의 합병·결합, 취득 및 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손실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비과세 합병, 결합 및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합병, 결합 및 취득의 계획이 사업목적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금지되며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업분할의 경우에도 합병의 규정과 유사하게 국세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기업공개(IPO) 등록 또는 추가 외국 자본 투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Tax facility for venture capital company investment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벤처캐피탈 회사가 투자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Reinvestment of branch profits 지점이윤의 재투자
고정사업장이 세후 이익을 동일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까지 인도네시아에 특정 투자형식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특정기간 동안 해당 이익에 대한 지점이윤세는 면제됩니다.

LST Concessions 사치품 소비세 혜택

LST incentive for motor vehicles
LST 인센티브는 친환경 오토바이에 대하여 LST 과세표준에 공제 형태로 적용(LST과세표준의 0%, 또는 93^{1/3}%)되며, 동 혜택은 낮은 금액의 LST를 납부하거나 LST 납부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Concessions on special projects and special zones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차입이나 해외차관의 정부프로젝트
해외차입 또는 차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정부프로젝트는 해당 자금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특정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정부 Project Table of Contents (*Daftar Isian Proyek/DIP*) 또는 유사한 문서를 통해 발표됩니다.

해외자본이나 차관을 통한 정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요 계약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가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차(second-level) 계약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는 별도로 해외자본이나 차관을 통한 정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요 계약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재화의 수입과 해외 과세대상 용역의 사용 및 해외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 및 LST 비징수;
- 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비징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해외차입 또는 해외차관이 부분적으로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세혜택도 해외차입 또는 차관금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공공 민간 파트너쉽

동 혜택은 인프라스트럭쳐 및 사회기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 강화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작성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하여 동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통합경제개발지구
통합경제개발지구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KAPET)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와 유사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PET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기의 조세혜택 이외에도 KAPET내의 보세구역을 보유한 기업은 아래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치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LST 미징수;
- 생산활동과 직접관련된 자본재와 장비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면제;
- 자본재, 장비 및 가공을 위한 재화와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이연;
- 기계장치와 특정 부속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미징수.

Bonded Stockpiling Area 보세 저장 구역

현행 보세 저장 구역(*Tempat Penimbunan Berikat*)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구역 (Bonded Zone);
2.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3. 보세 전시 장소 (Bonded Exhibition Place);
4. 면세점 (Duty Free Shop);
5. 보세 경매 장소 (Bonded Auction Place);
6. 보세 재활용 장소 (Bonded Recycling Area);
7. 보세 물류 센터 (Bonded Logistic Centre).

위의 보세혜택 중 주요한 3가지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주요한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유예;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Bonded Zones 보세구역

보세구역(*Kawasan Berikat/KB*)은 수출위주의 제조기업, 수입대체기업, 다운스트림 산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부여되며, 또한 항공, 선박제조, 철도 및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에도 부여가 됩니다. 보세구역 혜택을 받는 회사는 내수판매에 대하여 쿠타제한이 있으며, 수출실적 및 보세구역/ 자유무역지대/특별경제구역으로의 매출금액의 50%까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보세창고 (*Gudang Berikat*) 혜택은 특정 기간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순한 처리공정을 하기 위하여 수입된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Bonded Logistic Centre 보세 물류 센터

보세 물류 센터(*Pusat Logistik Berikat*)는 위에서 설명한 보세창고와 유사하나, 재화가 보세 물류 센터에 입고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또는 단순한 활동의 처리공정을 위하여 관세 지역 외부에서 수입한 재화 또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수입한 재화의 보관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FTZ' 또는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KPBPB*)로 반입되는 재화와 자유무역지대 내의 회사들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의 지역의 지정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대 내의 납세의무자는 하기의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 무형자산과 과세대상 용역의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로 공급되거나 보세 저장 구역(Bonded Stockpiling Area) 또는 특별 경제 구역 내의 회사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Special Economic Zone 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Kawasan Ekonomi Khusus/KEK*)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다양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은 각각의 *KEK*에서 결정된 주요 활동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KEK*의 지정은 별도의 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KEK*에서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인 세금 면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상업 생산이 시작된

날로 부터 10-20 년 동안 적용되며, 법인세 면제 기간이 지난 납세자는 이후 2 회계 기간 동안 법인세의 50 %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KEK 내의 납세자가 법인세 면제/경감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 납세자는 조세혜택 제도하의 투자소득공제와 유사한 KEK-투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법인세 경감혜택 이외에도 KEK내의 납세자는 하기의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특정 재화의 구입 및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건설 및 개발 단계에서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 생산 단계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입관세의 유예;
- 무체 재화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징수;
-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와 용역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별경제구역내 특정 거래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 특정 토지 및 건물의 거래 대한 소득세 미징수;
- 관광업종의 특정 거래에 대한 특별 세금 우대;
- 50%에서 100%까지 잠재적 지방세에 대한 감면.

Industrial Zone 산업단지

산업단지(*Kawasan Industri/KI*)의 허가와 결정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적용 가능한 조세혜택은 산업단지의 산업 개발 구역(*Wilayah Pengembangan Industri/WPI*, *Industrial Development Area/IDA*)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Advanced IDA (*WPI Maju/WPIM*)
2. Developing IDA (*WPI Berkembang/WPIB*)
3. Potential I IDA (*WPI Potensial I/WPIP I*)
4. Potential II IDA (*WPI Potensial II/WPIP II*)

WPI의 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및 관세 혜택 | WPIM* | WPIB | WPIP I | WPIP II |
|---|-------|------|--------|---------|
| 상업생산 시점 이후부터 5년 - 15년 간 10% - 100%의 법인세 감면 | ✓ | - | - | ✓ |
| 내국 투자 세액 공제와 유사한 혜택 (투자금액의 30% 소득공제, 가속 상각 인정 등) | ✓ | ✓ | ✓ | - |
| 부가세 과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장비(spare part 제외)의 수입 및 구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 | ✓ | ✓ | ✓ | ✓ |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자재의 수입 관련 관세 면제 혜택** | ✓ | ✓ | ✓ | ✓ |

* WPIM은 상기의 법인세 감면혜택과 투자소득공제 혜택 중 한 개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KI의 구분과 관련 납세자의 비지니스 주기(예시 : 건설단계 또는 개발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적용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MK-105에서 설명하고 있다.

BKPM Masterlist facility

투자조정청(BKPM)은 기계장치와 원재료의 수입과 관련하여 Masterlist를 발행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국세청에 승인을 요청하여 부가세, 사치세 및 수입원천징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x Exemption and Drawback Facilities for Exports 수출에 대한 조세 면제와 환급

온전히 수출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혜택으로 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ITE Exemption 면제

최종 생산 재화가 수출되는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면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동 수입과 관련한 부가세 및 사치세도 또한 징수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중소기업(SME)에 대하여는 보다 포괄적인 혜택이 부여되어, 원재료 및 샘플제품 이외에 기계장치의 수입에 대하여도 동 혜택이 적용되어 수입관세, 부가세 및 사치세가 면제됩니다.

KITE Drawback 환급

최종적으로 수출된 완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기 납부된 수입관세에 대하여, 수출된 완제품 생산에 소요된 부분만큼 환급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National Capital named “Nusantara”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누산타라”(Ibu Kota Negara bernama Nusantara/IKN)라는 새로운 국가 수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중앙 정부 또는 IKN 당국의 권한 하에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소득세

- a. IKN 및 파트너 지역(Daerah Mitra/DM)의 법인세(CIT) 인하;
- b. 금융 센터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 면제;
- c. IKN에 본사/지역 사무소 설립/이전 시 법인세 감면;
- d. 인턴십 프로그램 및/또는 직업 훈련에 대한 세제 혜택;
- e. R&D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 f. 기부 및/또는 공공, 사회 및/또는 기타 비영리 시설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
- g. 제21조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로정부가 부담
- h. 영세 및 중소 기업을 위한 0% 최종 분리과세;
- i. 토지 및 건물 권리 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VAT 미징수에 따른 VAT 혜택 또는 특정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인도에 대한 LST 면제
3. 수입관세, 소득세법 22조 면제 및 특정 수입 자본재, 특정 수입 상품과 자유 무역 지역, 특별 경제 구역 및/또는 보세 저장 구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하여 VAT 미징수
4. 특별 지역세, 수익 및 부과금:
 - a.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유형의 토지 권리(Hak Atas Tanah)에 한해 L&B 취득세 0% 적용(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 b. 특정 기간 동안 건물 승인 및 적절한 기능 증명서 발급에 대해 IDR 0 요금 징수
5. IKN에서의 투자 활동 이행을 위한 촉진, 토지 제공 및 인프라:
 - a. 투자 기업들을 위한 토지/장소 제공;
 - b. 시설/인프라 제공;
 - c. 투자편의 및 보안 제공; 및/또는
 - d. 바로 투입 가능한 숙련된 인력 제공
6. 사업 편의 목적 주택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세제 혜택 포함).

Regional Tax 지방세

지방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Hubungan Keuangan antara Pemerintah Pusat dan Pemerintahan Daerah*/"HKPD") 되었습니다. 동 PTB에서는 지방세의 개요 및 토지건물의 취득에 대한 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The Regional Tax/Duty rates and “Opsen”

HKPD법의 세율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 과세종목 | HKPD 세율 |
|-----|--|-----------|
| 1 | 농촌 및 도시의 토지/건물세 Rural and Urban Land and Building Tax (<i>Pajak Bumi dan Bangunan Perdesaan dan Perkotaan/PBB-P2</i>) | 최대 0.5% |
| 2 | 토지건물 취득세 <i>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i> | 최대 5% |
| 3 | 자동차세 PKB | |
| | 첫번째 소유권 – 일반 | 최대 1.2% |
| | 두번째 및 이후의 소유권 – 일반 | 최대 6% |
| | 첫번째 소유권 – 특별지역 | 최대 2% |
| | 두번째 및 이후의 소유권 – 특별지역 | 최대 10% |
| | 특정 사용목적(예: 대중교통, 소방차, 스쿨버스, 구급차 등) | 최대 0.5% |
| | Opsen | PKB 의 66% |
| 4 | 중장비세 Heavy Equipment Tax (<i>Pajak Alat Berat/PAB</i>) | 최대 0.2% |
| 5 | BBNKB | |
| | 첫번째 소유권 – 일반 | |
| | 두번째 및 이후의 소유권 – 일반 | 최대 12% |
| | 특별지역 | 최대 20% |

| No. | 과세종목 | HKPD 세율 |
|-----|--|------------------|
| | Opsen | BBNKB 의 66% |
| 6 | 자동차 연료세 Motor Vehicle Fuel Tax (<i>Pajak Bahan Bakar Kendaraan Bermotor</i>) | 최대 10% |
| 7 | Pajak MBLB | |
| | 일반 | 최대 20% |
| | 특별지역 | 최대 25% |
| | Opsen | Pajak MBLB 의 25% |
| 8 | 수도세(지상) Surface Water Tax (<i>Pajak Air Permukaan</i>) | 최대 10% |
| 9 | 담배세 Cigarette Tax (<i>Pajak Rokok</i>) | 10% |
| 10 | 광고세 Advertisement Tax (<i>Pajak Reklame</i>) | 최대 25% |
| 11 | 지하수세 Groundwater Tax (<i>Pajak Air Tanah</i>) | 최대 20% |
| 12 | 제비집(동지)세 Swallow's Nest Tax (<i>Pajak Sarang Burung Walet</i>) | 최대 10% |
| 13 | 특정 재화 및 서비스세 Certain Goods and Services Tax (<i>Pajak Barang dan Jasa Tertentu/ PBJT</i>) | |
| | 식음료 Food and Beverage | 최대 10% |
| | 전기 Electric Power | |
| | 일반전기사용 General use of electricity | 최대 10% |
| | 산업 및 석유, 가스 광업에 의한 전기 Electricity from other sources by industries and Oil and Gas mining | 최대 3% |
| | 자가생산전력 Self-produced electricity | 최대 1.5% |
| | 호텔서비스 Hotel services | 최대 10% |
| | 주차서비스 Parking services | 최대 10% |
| |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Art and Entertainment services | |

| No. | 과세종목 | HKPD 세율 |
|---------------|------|-----------|
| 일반 | | 최대 10% |
|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등 | | 40% - 75% |

Land and Building Tax 부동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세(*Pajak Bumi dan Bangunan/PBB*)가 부과됩니다. PBB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관계(Hubungan Keuangan antara Pemerintah Pusat dan Pemerintahan Daerah/HKPD)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지방세의 일부로 각 지방 정부가 각 관할지역의 PBB 규정(Peraturan Daerah/PERDA)을 발행합니다.

HKPD 법에 따른 PBB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음 산업을 제외한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됩니다.

- 조림업;
- 플랜테이션;
- 광산;
- 영토 외의 국가 수역 지역에 위치한 기타 산업.

HKPD 법에 따라 PBB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건물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등록된 재산으로써 행정목적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것;
- 종교, 사회복지, 보건, 교육, 국가문화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 묘지, 고고학 유적지 등과 유사한 것;
-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상 삼림, 국립공원, 지역관할 목초지와 과세권이 없는 국유지;
- 상호 등등대우 원칙에 따른, 외교공관의 토지와 건물;
- 재무부(MoF)에서 인정한 국제기구의 토지와 건물;
- 철도노선, LRT, MRT 등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

- 지역의 부동산과세적용가액(Nilai Jual Objek Pajak/NJOP)에 기반한 기타 주거용 건물

*PBB*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과세통지서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g/SPPT*)에 따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가진 개인과 조직 및 건물의 소유권·통제권이나 수익권을 가진 개인과 조직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PBB*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HKPD)에 따른 *PBB* 세율은 최고 0.5%이며, 납세금액은 부동산과세적용가액(NJOP)에서 비과세 금액 (Non-taxable NJOP)을 차감한 가액의 일정 금액(20 ~ 100%)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모든 변경은 관련규정 (PERDA)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비과세 금액은 최저 IDR 10 million에서 결정되며, 한 지역에 2 개 이상의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한 경우 한 개의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토지와 건물 이전 관련 세금 토지와 건물의 이전이 있는 경우, 매도자에게 이전/판매에 대한 인정이익 (deemed gain)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총 이전대가 (과세표준)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단순 주택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가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최종분리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서(*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관련 공증문서에 따른 실제 거래가액과 거래유형에 따라 실제로 수령하였어야 할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정부기관에 의해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경매의 경우, 거래가치가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이 됩니다.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토지건물 취득에 따른 의무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토지건물 취득에 따른 의무 (*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를 부담하게 됩니다. *BPHTB*는 지방세법 (*HKPD*)에 따른 지방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적격한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법인에 대한 기증, 등기분할, 경매, 법원명령의 실행, 기업인수, 합병, 결합, 확장 및 포상 등을 포함합니다.

*BPHTB*는 부동산취득적용가액 (*Nilai Perolehan Objek Pajak/NPOP*)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건물의 권리에 대한 부동산과세적용가액 (*Nilai Jual Objek Pajak/NJOP*) 또는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세금액은 부동산취득적용가액 (*NPOP*)에서 비과세상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대 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상한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최저 IDR 80 million 이나, 상속의 경우 최저 IDR 300 million에서 시작하며, 정부는 비과세상한금액을 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BPHTB*는 공증인의 입회하에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 이전되는 관련 문서가 서명되는 날에 납세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병·결합 또는 확장의 경우, 해당 합병·결합 또는 확장 문서에 서명한 날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권한있는 공무원이 경매 보고서에 서명하는 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Stamp Duty 인지세

인지세는 소액으로 특정문서에 대하여 IDR 10,000 의 고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계약서, 인증서, 진술서 및 이와 유사한 문서와 그 사본;
- b. 공증서와 그 사본 및 발췌;
- c. 토지공증인(*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이 작성한 공증서와 그 사본;
- d. 모든 형식 및 이름의 유가증권;
- e. 증권 거래 서류;
- f. 경매 문서 및 그 인용, 발췌, 사본;
- g. 5 백만 루피아 이상의 지급, 결제의 확인, 금전의 수령이 기술된 문서의 전체 또는 그 일부;
- h.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문서.

인지세는 종교적 또는 비상업적 활동만을 위한 부동산 권리의 양도에 관한 문서 및 정부 정책의 시행에 관한 문서와 같은 특정 문서에 대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납부 및 신고

특정기간 또는 연간 발생한 납세의무는 지정된 은행 (*bank persepsi*)을 통해 국고에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세무신고 서식을 통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와 신고는 월간 또는 연간으로 수행되며 연간 및 월간 모두 수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Overbooking (*pemindahbukuan*) 절차를 통해 예치 세금(*tax deposit*)을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치 세금은 특정 세금 납부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납세자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금의 신고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Monthly tax obligations 월 세무신고 의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는 익월 15 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익월 20 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VAT 및 LST는 일반적으로 익월 말까지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기한 전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Annual tax obligations 연 세무신고 의무

| 세금 유형 | 납부기한 | 신고기한 |
|-------|----------------------------|--------------------|
| 법인소득세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신고전 납부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
| 개인소득세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신고전 납부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

| 세금 유형 | 납부기한 | 신고기한 |
|----------------------------------|-------------------------------------|------|
| 부동산세 (PBB) (SPPT) 수취 후 6개월 이내 | 지방정부로부터 납세통지서 (SPPT) 수취 후 6개월 이내 | N/A |

상기 세금의 지연납부 시 매월 MOF에서 정한 이자율(MIR)에 일정율이 가산된 지연이자가 최대 24 개월간 부과됩니다. 1 개월의 일부 기간 지연(예를 들어, 1 일 지연)도 1 개월 지연으로 간주됩니다.

지연 세무신고 또는 미신고에 대하여 다음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 세무신고 유형 | IDR |
|------------|-----------|
| 부가세 신고 | 500,000 |
| 기타 월별 세무신고 | 100,000 |
| 개인소득세 신고 | 100,000 |
| 법인소득세 신고 | 1,000,000 |

연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납세자는 최장 2 개월의 신고연장을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이전에 DGT에 임시 납세액과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시 납세액은 연장통보서 제출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세액이 임시 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족분 납부시 까지 매월 재무부 이자율(MIR)을 적용한 가산세가 최대 24 개월간 부과됩니다.

해당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경우, DGT는 납세자에게 경고서한 (warning letter)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고서한은 일반적으로 경고서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한을 무시하는 경우 DGT는 재무부 고시 월별 이자율에 더하여 결정세액의 20% 할증료가 합산된 벌과금을 최대 24 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세무신고는 전자세무신고 (e-tax returns)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일부 특정납세자는 예외). 전자세무신고는 DGT가 승인한 채널 또는 e-

filling 을 통해 e-tax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정 납세자의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는 e-filing 이 의무사항 입니다.

Early tax refunds 조기 세금 환급

조기 세금 환급은 다음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B. Golden Taxpayer 성실납세자

- 1)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2)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하여 미납세액이 없어야 함. 다만, 미납세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 또는 지연납부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 3) 과거 3 개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 4) 과거 5 년간 조세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경우.

C. Taxpayers with low refund values 낮은 금액의 환급금액으로 인한 조기 환급 가능한 납세자

- 1) 어떠한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AITR)상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2)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개인이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상 소득세 환급금액이 IDR 100 million 이하인 경우;
- 3)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서상 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 경우;
- 4) 부가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상 환급금액이 IDR 5 billion 이하인 경우.

D. Low-risk PKPs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

법인이 하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1) 수출활동;

- 2)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부가세 징수자(VAT Collector)에게 공급하는 경우;
- 3)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나,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

조기 세금 환급신청은 적합한 세금 신고서의 환급신청란에 체크함으로써 신청이 됩니다. 조기 세금 환급신청 금액이 환급 승인 금액과 상이한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서한을 통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재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적정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DGT는 모든 조기 환급신청에 대하여 형식 요건 및 실질 요건의 검토를 수행합니다.

ITO는 조기환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부포지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벌과금이 부과됩니다.

Accounting for Tax 세무기장

일반적으로 세무목적상 회사의 장부는 세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도 세무기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또는 활동에서 얻은 매출이 최종분리과세되거나 연 48 억 루피아 이하로써 비과세 되는 경우 관련 기록만 수행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장부는 Rupiah로 기장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인도네시아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Penanaman Modal Asing/PMA*), 고정사업장,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 해외상장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Standar Akuntansi Keuangan/SAK*)상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능통화를 USD로 하는 납세자는 DGT의 승인을 받아 USD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투자계약 (Collective investment contract, *Kontrak Investasi Kolektif/KIK*)은 USD 표시 투자 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USD 기장이 허용됩니다.

DGT 승인신청은 USD 기장 회계연도 시작 3 개월 이전에 DG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DGT는 1 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개월 내 결정이 없는 경우,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PSC'), Contract of Work('CoW') 및 광업라이센스(*Izin Usaha Pertambangan/IUP*)를 적용받는 회사는 DGT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USD와 영어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는 USD 기장 회계연도 시작 3 개월 이전에 DG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과 USD 이외의 통화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USD 통화와 타언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조세납부는 Rupiah로 해야하며 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PSC 회사 제외). 연 법인세신고 시, USD는 Rupiah와 병행표시하여야 합니다.

USD 장부기장 승인을 받은 회사는 DGT 의 승인 하에 다시 Rupiah 기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D 기장을 취소한 이후 5 년간, USD 기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Tax Audits and Tax Assessments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

인도네시아는 납세자가 현행 세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하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DGT는 이러한 자진신고납부가 납세의무를 다한 것인지 세무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결과로 세금추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Tax audits 세무조사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정 과세기간(1개월) 또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특정 세목에 대하여 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회사에서 또는 DGT에서, 혹은 둘 모두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onditions triggering a tax audit 세무조사 실시 요건

조기세금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급신청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합니다. DGT는 환급신청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세무조사는 대개 환급신청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법인세 환급신청 시, 일반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세목에 대한 환급신청 시, 일반적으로 해당 세목만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DGT는 다른 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무조사 이외에도 DGT는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 타겟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세무조사(special tax audit)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별도의 절차와 일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ne-month rule 1 개월 이내 자료제출 규정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조사관이 요청한 문서와 정보를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개월 이내에 해당 문서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DGT는 추정 이익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1 개월 내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와 정보를 추정세액 금액에 대한 분쟁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Closing conference 종료회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임시 발견 사항을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사전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종료 시점에 조사관은 세무조사 수정 (corrections)을 포함한 최종 조정사항을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조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조정사항에 대하여 반론을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종료회의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료회의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적근거와 관련한 논쟁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 (Regional Tax Office)의 품질감리팀 (Quality Assurance Team, 'QAT')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QAT가 준비한 문서로 기록됩니다.

세무조사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답변과 QAT 토론결과 및 종료회의에서의 토론을 거쳐 최초 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토론결과는 종료회의록에 기록되며 동 서류는 세무조사팀과 납세자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조정사항 건별로 '동의 (Agree)' 또는 '미동의 (Disagree)'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종료회의시 동의한 조정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미동의한 조정사항은 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동 결정서가 발부되는 시점까지 체납세금이 되지 않습니다.

Products of a tax audit 세무조사 결과물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결과물은 위에서 언급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SKP*)와 징수 통지서 (*Surat Tagihan Pajak /STP*)로 구성되며, 이는 종료회의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징수 통지서(STP)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SKP)가 규정하지 못하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사용되며, 세무당국은 당해 연도의 특정기간 동안의 납부세액 및 지연이자를 결정하는데 이를 사용합니다.

Tax assessments 세금추징

세금추징결정서 (tax assessment letter)는 특정 과세기간 또는 연간의 개별 세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의 특정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납부세액;
- 적용가능한 공제세액;
-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의 차액 (과다납부, '0' 또는 과소납부);
- 행정 벌과금 (지연이자 또는 부과금).

Types of tax assessment letters 세금추징결정서의 종류

세금추징결정서의 명칭은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의 가감결과에 따라 다르며, 결과적으로 다음의 3 가지 세금추징결정서가 있습니다:

- 과다납부 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SKPLB*), 납부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은 경우;
- 과소납부 세금 추징 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 납부세액이 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0 (Nil)의 세금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Nihil/SKPN*),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이 동일한 경우.

과소납부 세금 추징 결정서 (*SKPKB*)가 발행된 경우, MIR 에 스프레드가 가산된 이자 형태로 최대 24 개월간 적용된 금액 또는 75%의 행정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적용하는 벌과금이 달라집니다. 벌과금 금액은 과소납부 금액에 관련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가세 추징분에 대해 여러개의 벌과금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높은 행정 벌과금 한 개만이 적용됩니다.

Payments of tax assessment 세금추징액의 납부

세금추징결정서에 따른 납부세액은 관련 결정서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Objection)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은 압류영장(Distress Warrant)을 통해 징수됩니다.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국세청은 납세의부가 발생한 과세기간(월) 또는 과세연도의 말로부터 5년 이내에만 과소납부 세금 추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월 또는 연도에 대한 세금추징이 결정되고 나면, 납세신고서 또는 세무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세금추징결정서가 소멸시효(5년) 내에 발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과소 납부 추징 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SKPKBT*)에는 납부세액의 100%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서의 납부세액은 소멸시효(5년) 내에 납부추징결정이 없다면 확정이 되나, 조세범죄를 저지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금추징(과소납부 세금 추징 결정서)이 가능합니다.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압류영장을 통한 징수

합법적인 조세 징수방법으로 기한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압류영장 (Distress Warrant, *Surat Paksa*)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 징수방법은 다음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 징수 통지서 (Tax Collection Letters/STP);
- 과소납부 세금 추징 결정서 (Underpaid Tax Assessment Letters/SKPKB);
- 추가 과소 납부 추징 결정서 (Additional Underpaid Tax Assessment Letters/SKPKBT);
- 이의제기 결정서 (Tax Objection Decision Letters), 납세자의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 조세법원 결정서 (Tax Court Decisions), 납세자의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 수정 결정서 (Correction Decision Letters), 납세자의 추가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수령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지받은 과소납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연납부시 매월 MIR에 기반한 가산세가 최대 24개월간 부과됩니다.

현행 조세행정법 상, 납세자가 특정 세금추징결정서에 대하여 이의신청 (Objection)이나 이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종료회의에서 납세자가 동의한 금액에 대하여만 최소한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료회의시 동의하지 아니한 추징세액 부분은, 이후 국세청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세법원 소송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소납부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압류영장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 경고서한 (*Surat Teguran*) 발행: 납부기한 종료후 7 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b. 압류영장 (*Distress Warrant, Surat Paksa*) 발행: 경고서한 발행 이후 21 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c. 재산몰수명령서 (*Confiscation Order, Surat Sita*) 발행: 압류영장 발행이후 48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d. 물수재산에 대한 경매공고: 재산몰수명령서 발행 이후 14 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 e. 경매 실행: 경매공고 이후 14 일이 경과하기까지 미납한 경우.

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불복과 해결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조세불복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 (SKP)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발생합니다. SKPKB, SKPKBT 및 STP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과소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합법적인 조세징수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Objections 이의신청

세금추징결정서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결정서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Objection, Keberata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납세자가 납세금액을 산출하고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결정서 (Objection Decision Letters)를 발행해야 합니다. 12 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에 의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과소납부금액의 30%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소납부금액과 벌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납부유예).

이의신청은 제 3 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의신청 제출기한 및 국세청의 결정기한이 적용됩니다.

Appeals 소송

국세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송 (*Banding*)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에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법원법 (Tax Court Law)에 따라 납세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납부세액의 최소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법원은 12 개월 이내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조세법원 판결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6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Other avenues for tax dispute resolution

조세불복 해결의 다른 방법

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정요청 (Correction Request)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세금추징결정서 또는 결정서에 기초하여 파생되는 결정에 대해 이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생되는 결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서 (Objection Decision Letters);
- 행정별과금에 대한 감면 또는 취소 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세금추징 감면 또는 취소 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the Reduction or Cancellation of Tax Assessment);
-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조기환급 결정서 (Decision Letters on an Early Refund of Overpaid Tax).

국세청은 수정요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6 개월 이내에 결정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정요청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의 수정요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송 (*Gugata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압류영장 실행에 대하여도 조세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은 실행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조세법원은 6 개월 이내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Judicial Review Requests to the Supreme Court 대법원 소송
조세법원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조세불복과 관련된 당사자는 조세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Judicial Review Request, Peninjauan Kembali/PK*)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때에 가능합니다:

1. 소송 상대방의 위증·사기·거짓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2. 중요한 문서증거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문서증거가 조세법원에서
고려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경우;
3. 청구의 일부분이 이유없이 무시된 경우;
4. 청구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 경우;
5. 결정이 현행 세법규정과 명백히 상충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 2 의 경우
기한은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이며, 3 과 4 와 5 의 경우 기한은
조세법원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에 대하여 6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Contacts 연락처

Our Tax professionals are available to advise and help you with all aspects of taxation and to ensure that you meet your commitments efficiently and promptly.

If you have any queries, contact your usual consultant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rofessionals:

General Inquiries

Suyanti Halim
Otto Sumaryoto
Runi Tusita

Mergers & Acquisitions and International Tax

Andrias Hendrik
Omar Abdulkadir

Legal and Inward Investment

Indra Allen
Adi Pratikto
Danar Sunartoputra
Agnes Wardhana
Dimas Bimo
Fifiek Mulyana
Indra Natakusuma Puji
Atma
Irene Kurniawan
Narindra Krisnamurti

Global Mobility and Workforce Tax

Hisni Jesica
Rita Susanto
Trinyotin

Payroll outsourcing

Adi Pratikto
Irene Kurniawan

Energy, Utilities & Resources

Antonius Sanyojaya
Alexander Lukito
Otto Sumaryoto
Suyanti Halim
Turino Suyatman
Omar Abdulkadir
Raemon Utama
Tjen She Siung

Indirect Taxes (VAT)

Abdullah Azis

Consumer, Industrial Products and Services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Hendra Lie
Abdullah Azis
Ali Widodo
Andrias Hendrik
Anton A Manik
Ay Tjhung Phan
Brian Arnold
Gadis Nurhidayah
Lukman Budiman
Yuliana Kurniadja
Yunita Wahadaniah
Esa Perdana
Hyang Augustiana
Marlina Kamal
Nicholas Sugito
Oki Octabiyanto
Susetyo Putranto
William Christopher
Yessy Anggraini

Customs

Enna Budiman
Made Natawidnyana

Government & Public Services

Alexander Lukito
Adi Pratikto
Suyanti Halim
Fifiek Mulyana

Financial Services

Margie Margaret
Yuliana Kurniadja
Angeline
Nikolas Handradjid

Transfer Pricing

Ay Tjhung Phan
Dexter Pagayonan
Hasan Chandra
Peter Hohtoulas
Ryuji Sugawara
Adrian Hanif
Gerardus Mahendra
Irene Satyanagara
Kianwei Chong
Novie Mulyono

Other contracts

Japan Business Desk
Ryuji Sugawara

China Business Desk
Toto Harsono
Ding Tian

Korea Business Desk

Taehun Jung
Lok Budianto
Inhyuk Park

Korean Business Desk Contacts

한국데스크 연락처



Taehun Jung 정태훈

Advisor (상무), Korea Desk Leader

taehun.jung@pwc.com

T: +62 21 509 92901

M: +62 811 989 1403



Lok Budianto

Korea Desk Co-Leader, Assurance

lok.budianto@pwc.com

T: +62 21 509 92901



Inhyuk Park 박인혁

Advisor (이사), Korea Desk Assurance

inhyuk.park@pwc.com

T: +62 21 509 92901

M: +62 811 851 7209

A Summary of Indonesian Tax

The information in this booklet sets out tax law and practice as of 31 December 2024.

WTC 3
Jl. Jend. Sudirman Kav. 29-31
34th, 36th-43rd Floor
Jakarta 12920 - Indonesia
T: +62 21 5099 2901 / 3119 2901
F: +62 21 5290 5555 / 5290 5050

Pakuwon Tower
Tunjungan Plaza 6, 50th Floor, Unit 02-06
Jl. Embong Malang No. 21-31
Surabaya 60261 - Indonesia
T: +62 31 9924 5759

Email: id_contactus@pwc.com
www.pwc.com/id

This publication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advice. You should not act up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without obtain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express or implied) is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PwC Indonesia, its members, employees and agents do not accept or assume any liability, responsibility or duty of care for any consequences of you or anyone else acting, or refraining to act, in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or for any decision based on it.

The documents, or information obtained from PwC, must not be made available or copied, in whole or in part, to any other persons/parties without our prior written permission which we may, at our discretion, grant, withhold or grant subject to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legal responsibility or absence thereof).

© 2025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